서울여자대학교
SEOUL WOMEN'S UNIVERSITY

서울여자대학교 2017

편입학 모집안내

(01797)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621 서울여자대학교
입학처 입학관리팀 : TEL 02-970-5051~4 FAX 02-3399-2844
http://admission.swu.ac.kr

목 차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1

전형일정 2

지원자격

일반편입학 3
학사편입학(정원 외) 4
특별전형(정원 외)
■ 농어촌학생편입학 4
■ 기회균등편입학 5
■ 재외국민편입학 6

제출서류 9

전형방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14
선발기준 14
영어고사 14
미술 실기고사 15

수험생 유의사항 15

원서접수 및 등록

원서접수 18
전형료 19
합격자 발표 및 등록 20
충원합격자 발표 및 등록 20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 21
기타 학사안내 21

학교위치 및 교통안내 23

각종서식 24

Ⅰ.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계열	대학	모집단위 (학과/전공)	모 집 인 원						
			정원 내	정원 외					
			일반편입	학사편입	농어촌학생 편입	기회균등 편입	재외국민 편입		
							재외국민	12년전과정	북한이탈주민
인문 사회	인문 대학	국어국문학과	2	2	-	-	-	제한없음	제한없음
		영어영문학과	3	2	-	-	-		
		불어불문학과	2	-	-	1	-		
		독어독문학과	2	-	-	-	-		
		중어중문학과	2	-	-	-	-		
		일어일문학과	2	1	-	-	-		
		사학과	2	-	-	-	-		
		기독교학과	-	-	-	-	-		
	사회 과학 대학	경제학과	4	2	-	-	-		
		경영학과	4	3	-	-	-		
		문헌정보학과	2	-	-	-	-		
		사회복지학과	2	2	1	-	-		
		아동학과	2	2	-	-	-		
		행정학과	2	2	-	-	-		
		저널리즘전공	2	1	-	-	-		
		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전공	2	1	-	-	-		
		디지털영상전공	2	1	-	-	-		
사범		교육심리학과	1	-	-	-	-	-	-
자연	자연 과학 대학	수학과	2	-	-	-	-	제한없음	제한없음
		화학과	3	1	-	-	-		
		의류학과	2	1	-	-	1		
		원예생명조경학과	1	2	-	-	-		
		생명환경공학과	3	1	-	1	-		
		식품공학과	2	2	-	-	-		
		식품영양학과	2	2	-	-	-		
예·체능		체육학과	-	-	-	-	-		
자연	정보 미디어 대학	컴퓨터학과	2	-	-	-	-		
		정보보호학과	-	1	-	-	-		
		멀티미디어학과	2	1	-	-	-		
		콘텐츠디자인학과	2	-	-	-	-		
예·체능	미술 대학	현대미술과	2	-	-	-	-		
		공예학과	1	-	-	-	-		
		시각디자인학과	-	1	-	-	-		
		산업디자인학과	2	1	-	-	-		
합 계			**64**	**32**	**1**	**2**	**1**		

Ⅱ.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인터넷 원서접수	2016. 12. 27(화) 10:00 ~ 12. 30(금) 18:00 까지	원서접수는 인터넷 접수만 실시함 ■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http://admission.swu.ac.kr) ■ ㈜유웨이어플라이(원서접수 대행사, www.uwayapply.com)
서류제출	영어고사 당일 제출 (미술대학은 실기고사일에 제출)	■ 고사 종료 후, 각 고사장 감독관에게 제출 ■ 2016학년도 동계계절학기 성적이 포함된 최종성적표는 2017.1.20.(금)까지 제출 가능 ■ 자세한 사항은 P.9 ~ P.13 참고
고사장 발 표	2017. 1. 11(수)	■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http://admission.swu.ac.kr) ■ 개별연락은 하지 않음 ■ 공지된 개인별 실기고사 일정은 변경 불가함
영어고사	2017. 1. 14(토) 10:00 ~ 11:10	■ 대상자 일반편입학 인문사회계열, 사범계열, 자연계열 학사편입학 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 정원 외 특별전형(농어촌학생,기회균등,재외국민)
미술 실기고사	2017. 1. 18(수) 10:00 ~ 13:00	
최초 합격자 발 표	2017. 2. 2(목)	■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http://admission.swu.ac.kr) ■ 개별연락은 하지 않음
최초 합격자 등 록	2017. 2. 3(금) 09:00 ~ 2. 6(월) 16:00	■ 우리은행(고지서납부 또는 계좌이체) 또는 전국은행(계좌이체)에서 등록 ■ 합격통지서, 등록금납부고지서는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출력
충원 합격자 발 표	2017. 2. 7(화) 22:.00 ~ 2. 16(목) 21:00	■ 충원합격자 등록기간은 합격자 조회 시 안내 예정 ■ 발표방법 :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또는 개별전화통보 ■ 우리은행(고지서납부 또는 계좌이체) 또는 전국은행(계좌이체)에서 등록 **※ 충원합격자 발표 일정 및 방법은 변경가능하며 추후 변경 시 입학처 홈페이지 게재 예정**
충원 합격자 최종등록	2017. 2. 17(금) 09:00 ~ 16:00	

Ⅲ. 지원자격

☐ 전적대학의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 본교 재학생, 휴학생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졸업생은 지원가능).
☐ 본교 지원자격 뿐만 아니라 전적대학의 수료요건(2학년 또는 4학기 이상 수료)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전적대학에서 징계 제적된 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일반편입, 학사편입, 정원 외 특별전형(농어촌학생,기회균등,재외국민)을 중복 지원할 수 없고, 각 모집단위 간에도 중복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4학년 편입학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1 일반편입학

지원자 유형	지원자격	비 고
국내 정규 4년제 대학교	다음 항 모두 해당되는 자 ① 2학년 또는 4개 학기(계절학기 제외) 이상 수료(예정)자 ② 65학점 이상 취득한 자	산업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포함
국내•외 전문대학	다음 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① 국내•외 전문대학(2년제, 3년제) 졸업(예정)자 ② 전문대학 간호학과에서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의 2학년 또는 4개 학기(계절학기 제외) 이상 수료(예정)하고 6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교육부가 지정한 57개 전문대학 간호학과에서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고등교육법 제50조의3. p.4 참조) * 전문대학에 설치된 전공 심화과정은 대상이 아님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점취득자 중, 아래 하나에 해당되는 자 ①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예정)자 ② 학사학위과정자로서 70학점 이상 취득한 자	
독학사	학사학위 소지(예정)자	
외국대학교	국내 정규 4년제 대학교에 준하는 외국소재 정규대학에서 2학년 이상 수료(예정)한 자	졸업요구학점, 이수학기, 성적산출기준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전문학사학위 취득예정자(전문대학 졸업예정자 포함)의 경우 반드시 2017년 2월까지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미 취득 시 [지원자격 미달자]로 불합격 처리되므로 전문학사학위수여증명서를 입학 전 **2017. 2. 24(금)** 까지 입학처 입학관리팀으로 제출하여야 함.
☐ 계절학기는 학기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이수(예정)학점에는 포함됨.
☐ 수료란, 각 대학교에서 규정하는 2학년(4학기) 이상 수료기준에 해당하는 소정의 학점취득을 의미함
(단, 65학점 미만은 해당없음)

학사학위(4년제) 과정 간호과 지정('12~15학년도) 전문대학 현황

지정년도	대학명
'12학년도	군산간호대학교, 경복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강릉영동대학교, 선린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경북과학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기독간호대학교, 마산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혜전대학교, 거제대학교, 서영대학교, 여주대학교, 가톨릭상지대학교, 호산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대경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문경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신성대학교, 안동과학대학교, 안산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청암대학교, 충청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13학년도	동강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수성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14학년도	경남정보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동아인재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15학년도	경인여자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김해대학교, 대동대학교, 대원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2 학사편입학(정원 외)

지원자격	비 고
① 국내·외 정규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②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산업대학교 혹은 방송통신대학교 포함 ■ 학점인정제 혹은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사학위소지자 포함

□ 학사학위 취득예정자는 반드시 2017년 2월까지 학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미 취득 시 [지원자격 미달자]로 불합격 처리되므로 학사학위수여증명서를 입학 전 **2017. 2. 24(금)**까지 입학처 입학관리팀으로 제출하여야 함.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같은 법 제9조에 의거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3 특별전형(정원 외)

일반편입학 지원자격을 갖춘 자 중 아래 각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추가로 충족하는 자

가. 농어촌학생편입학

▶ 일반편입학 지원자격을 갖춘 자 중 본교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신입학 자격을 갖춘 자

① 국내 고등학교에서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자로 본교 기준에 부합하는 학교생활기록부를 가지고 있는 자

② 최종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과 거주사실을 확인받은 자

③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농어촌(읍·면) 소재 **초·중·고교 12년** 전(全) 교육과정을 입학에서 졸업까지 모두 이수한 자로서 해당기간의 재학기간 동안 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
- 농어촌(읍·면) 소재 **중·고교 6년** 전(全) 교육과정을 입학에서 졸업까지 모두 이수한 자로서 **부모와 본인 모두** 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

* 단, 부모의 사망·실종·이혼 등 기타 우리대학교가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자격 소명에 필요한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함

☐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합격자는 지원 불가
☐ 읍•면 지역은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을 의미하며(광역시•도, 도•농 통합 시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 포함)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지역을 포함함
☐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교(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등) 출신자는 지원 불가
☐ 고등학교(중학교, 초등학교) 재학 기간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도서•벽지 지역이 동 지역 또는 도서·벽지 해제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고등학교(중학교, 초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해당 지역을 읍·면·도서·벽지 지역으로 인정함
☐ 농어촌 학생이 2개 이상의 학교에서 재학한 경우 해당 학교 모두가 반드시 읍·면이나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여야 하되 동일한 읍•면이나 도서•벽지 지역이 아니어도 지원 가능함
☐ 지원자의 거주지, 부모의 거주지, 재학한 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읍•면이나 도서•벽지 지역이 아니어도 지원 가능함
☐ 농어촌학생 지원자격에 대한 교육부의 지침이 따로 있을 경우 추후 변경·보완될 수 있음
☐ 부모의 사망·실종·이혼 등 기타 본교가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자격 소명에 필요한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함
- 부모의 사망•실종 : 부 또는 모, 부모 모두가 사망·실종한 경우에는 법률상의 사망·실종일 이전까지의 주소지가 농어촌 지역이어야 하고, 지원자 본인과 동거하고 있는 부 또는 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여 함
- 부모의 이혼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이혼 전의 부모의 주소지는 농어촌지역이어야 하고 이혼 후에는 친권자(혹은 양육권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함. 단, 친권자(혹은 양육권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학생과 동거하고 있는 부모 중 1인을 확인함

☐ 입양 : 입양자의 경우 입양일 이후부터는 친권이 있는 양부모를 부모로 인정하며, 친권과 양육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육권(자녀교육권)을 가진 자를 부모로 인정함

나. 기회균등편입학

▶ 일반편입학 지원자격을 갖춘 자 중 본교 기회균등 특별전형 신입학 자격을 갖춘 자

① 국내 고등학교 전(全)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자

②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본인 및 자녀 또는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단, 가구는 직계가족을 의미)
  ★ 차상위 건강보험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 차상위 자활근로자, 한부모가족지원
-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학생(단, 가구는 직계가족을 의미)

※ 부모의 사망·실종·이혼 시 다음에 제시한 자를 부모로 인정함
- 부모의 사망·실종 : 부모 중 일방이 사망·실종한 경우 법률상 사망일·실종일 이후부터는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부모 모두 사망·실종한 경우 법률상 사망일·실종일 이후부터는 민법에서 정한 법률상의 친권이 있는 자
- 부모의 이혼 : 법률상 이혼일 이후부터는 친권이 있는 부 또는 모, 친권과 양육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육권(자녀교육권)을 가진 자

※ 입양 : 입양자의 경우 입양일 이후부터는 친권이 있는 양부모를 부모로 인정하며, 친권과 양육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육권(자녀교육권)을 가진 자를 부모로 인정함

다. 재외국민편입학

▶ 일반편입학 지원자격을 갖춘자 중 본교 재외국민 특별전형 신입학 자격을 갖춘 자

①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국내·외 고등학교를 포함하여 초·중·고등학교 12년 이상의 전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12년 전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중 12년 미만 학제를 가진 외국에서 초·중·고등학교 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② 아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지원자격 구분		자격요건	외국학교 재학기준 및 세부학력요건
외국영주 재외국민	① 영주교포 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영주권 발급받은 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하는 자	※ **외국학교 2년 이상 재학기준** 외국소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재학 또는 외국소재 고등학교 교육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외국의 중·고등학교에서 2년 이상을 계속해서 재학 (출입국이 빈번하여 계속해서 재학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소재 고등학교 교육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외국의 중·고등학교에서 통산 3년 이상 재학)
외국근무 재외국민	②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공무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하는 자	
	③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		
	④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2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하는 자	
	⑤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하는 자	
기 타 재외국민	⑥ 해외선교사 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했거나 거주하고 있으며,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또는 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한국교회연합에 가입된 종교단체에서 해외에 파견하여 외국에서 3년 이상 선교활동을 했거나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3년 이상 계속해서 재학하고 귀국하는 자 중 종교단체장이 추천하는 자	외국소재 고등학교 교육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외국의 중 · 고등학교에서 3년 이상을 계속해서 재학
	⑦ 현지법인 근무자 또는 자영업자 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했거나 거주하고 있는 현지법인 근무자 또는 자영업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3년 이상 계속해서 재학하고 귀국하는 자 ※ 현지법인 근무자에 현지회사 근무자 포함	
⑧ 12년 전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외국에서 초·중·고등학교에 상응하는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내국인	외국소재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12년 이상 전교육과정을 이수한자
⑨ 북한이탈주민(새터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으로 통일부장관의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을 받은 자	고등학교 학력 인정자

※ 12년 전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중 12년 미만 학제를 가진 외국에서 초·중·고등학교 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 12년 미만의 학제를 가진 국가 : 필리핀, 브라질,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등
- 해당국 및 외국(한국 포함)에서 교육과정을 혼합 이수한 경우는 제외

지원자격 구분	자격인정범위
영주교포 자녀	- 교포는 해외에 영주하는 자를 의미하며 해당국에서 취득한 영주권을 자격인정 기준시점까지 유지해야 함 - 영주권 제도가 없는 나라에서는 영주권에 해당하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 공무원의 범위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설치인증·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점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불인정) -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정부파견의사 및 언론기관 특파원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 외국정부 :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 (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 국제기구 : 정부 간의 국제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 (단,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단체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 해외근무자의 외국근무형태 인정기준은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한하며 유학, 교육, 연수, 출장 등의 외국 거주는 인정하지 않음

■ 최저 외국 영주·근무·거주·체류·재학기간 인정 기준

외국학교 재학형태	구분	외국영주 재외국민			외국근무 재외국민			기타 재외국민		
	기간	영주	체류	재학	근무	체류	재학	근무·영업·선교	체류	재학
① 고교과정 2년 연속 재학 ② 고교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 · 고 과정 2년 이상 계속 재학	보호자	2년	1년	-	2년	1년	-			
	배우자	2년	1년	-	-	-	-			
	학 생	2년	2년	2년	-	2년	2년			
③ 고교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 · 고 과정 3년 이상 비연속 재학	보호자	3년	1년 6개월	-	3년	1년 6개월	-			
	배우자	3년	1년 6개월	-	-	-	-			
	학 생	3년	3년	3년	-	3년	3년			
④ 고교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 · 고 과정 3년 이상 계속 재학	보호자							3년	1년 6개월	-
	배우자							3년	1년 6개월	-
	학 생							-	3년	3년

- 재학기간은 재학(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기준으로 학생이 실제로 재학한 기간입니다.
- 당해 학교과정의 해당 학년에 정상적으로 재학한 기간 중 소정의 학점 또는 성적을 취득한 학기만 유효한 재학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소정의 학점 또는 성적을 취득하지 못한 학기는 재학학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외국학교의 재학이 계속되는 경우 실제로 체류하지 않았더라도 방학 등 수학에 지장이 없는 기간에 한하여 재학 및 체류기간으로 인정합니다. 단, 국내학교로의 전학일자 이후 방학기간은 외국학교 재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외국학교에서 어학연수 목적만으로 재학한 기간은 외국학교 재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부모의 최저 외국체류기간은 **지원자 재학기간의 ½ 이상**이어야 합니다.
- 부모의 근무(영업, 선교)·거주(영주)·체류기간은 학생의 외국학교 재학인정기간과 중복되는 기간 안에서만 인정합니다.
- 외국근무 재외국민의 '보호자'는 부모 중 외국 근무자에 해당합니다.
- 외국영주 재외국민의 경우 부·모·학생의 영주기간 내의 체류 및 재학기간만 인정합니다.
- 외국근무 재외국민의 경우 보호자의 외국근무기간 내의 체류 및 재학기간만 인정합니다. 보호자의 경력증명서 상에 명시된 해외 파견근무기간을 벗어난 체류 및 재학기간은 지원 자격 취득을 위한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기타 재외국민의 경우 부모의 외국근무·영업·선교기간 내의 체류 및 재학기간만 인정합니다.
- 체류기간은 출입국사실증명서를 기준으로 해당국에 실제로 체류한 기간입니다.

■ 지원자격 심사기준

〈외국학교 인정 기준〉

① 외국학교란 외국에 소재한 학교를 의미하며,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② 외국학교는 부모의 근무국 내에 소재한 외국학교만을 인정합니다. 단, 부모 근무국의 지역, 종교, 전쟁, 이데올로기 등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본교에서 별도 심사 후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모의 근무국이 아닌 제3국 소재 학교도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③ 외국학교 형태는 해당국 교육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정규 학교만을 인정합니다. 유아원, 유치원 및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등은 제외됩니다.

〈외국학교 재학·체류기간 인정기준〉

① 국내학제(12년)의 초·중·고등학교 과정과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하여 외국의 학교과정과 학년을 인정합니다.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과정	우리나라의 중학교 과정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과정
외국의 1 ~ 6학년 과정 (Grade 1 ~ Grade 6)	외국의 7 ~ 9학년 과정 (Grade 7 ~ Grade 9)	외국의 10 ~ 12학년 과정 (Grade 10 ~ Grade 12)

② 초·중·고등학교 학제가 12년 미만인 국가는 부족한 학교과정 기간만큼 당해국 상급학교 과정(대학)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합니다. 단, 12년 전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중 **12년 미만 학제를 가진 외국에서 초·중·고등학교 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12년 이상의 전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12년 미만의 학제를 가진 국가 : 필리핀, 브라질,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등

※ 해당국 및 외국(한국 포함)에서 교육과정을 혼합 이수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③ 초·중·고등학교 해당학교 과정의 재학기간이 부족한 국내·외 검정고시 졸업자는 해당학교 과정 이수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④ 유급한 기간은 재학기간에서 제외합니다.

⑤ 같은 학년의 중복수학은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국내외 또는 외국학교 간 학제 차이로 인해 학기가 부족하게 된 경우, 부족학기수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복학기를 이수학기에 포함시켜 인정합니다.

⑥ 국내외 학교 또는 외국학교 간의 학제 차이로 인해 전학·편입·재입학 과정에서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단, 부족기간은 지원자격 취득을 위한 재학기간으로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⑦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상 월반(전·편입학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도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학업우수로 인한 월반 또는 조기졸업을 공식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 부족기간은 지원자격 취득을 위한 재학기간에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⑧ 위 기준 등을 원칙으로 지원자의 재학·체류기간을 인정하되 부득이하게 재학기간이 부족해진 자에 대한 인정 등은 우리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 지원자격 완화 적용

1) 외국근무 재외국민(해외근무 공무원·상사직원·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근무자·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은 배우자의 동반거주·체류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재외국민의 입학허용기간과 입학 인정횟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3) 복수국적자의 지원은 허용되나 무국적자의 지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해외 고교과정 2년 이상 이수 외국인)에 한해서는 복수국적자의 지원을 허용하되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의 지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Ⅳ. 제출서류

1 공통서류

1. **입학원서**(인터넷 원서접수 시 온라인 작성)
2. **학업계획서**(인터넷 원서접수 시 온라인 작성) <단, 학사편입과 예체능계열 지원자 제외>
3.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예정)**증명서**
4. **성적증명서**

가. 세부 지원자격별 공통서류 안내

대 상 자	제 출 서 류	비 고
대학/전문대학 졸업(예정)자	1. 졸업(예정)증명서 2. 성적증명서	
4년제 대학에서 2학년 이상 수료(예정)한 자 4년제 전문대학 간호학과에서 2학년 이상을 수료(예정)한 자	1. 수료(예정)증명서 2. 성적증명서	■ 수료(예정)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 재학증명서(재적/휴학 등)에 아래 내용 기재 + 대학 담당자 날인 수료(예정) 학년 | 2학년 수료 기준학점 | 취득학점 / 졸업학점 | / | 담 당 자 소속 | 이름 | (인) | 위 학생은 우리대학 2학년 수료(예정)자임
학점은행제 수료자	1. (전문)학사학위수여(예정)증명서 또는 학점인정증명서 2. 성적증명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 일반편입지원 : 전문학사학위수여(예정)증명서 또는 학점인정증명서 ■ 학사편입지원 : 학사학위수여(예정)증명서
독학사 취득(예정)자	1. 학사학위수여(예정)증명서 2. 성적증명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외국대학 졸업자	1.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사실확인서 2. 성적증명서 3. 졸업소요(요구)학점, 이수학기, 성적 산출기준에 관한 증빙서류	■ 졸업소요(요구)학점, 이수학기, 성적 산출기준에 관한 내용이 성적증명서에 명기되어 있는 경우 3번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음

2 자격별 추가 제출서류

지원자 유형	서류목록	비 고
외국대학 졸업자	1. 출입국사실증명서 2. 학력인정확인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 출입국관리사무소 발급 ■ 학력인정확인서 : 해당학교 소재국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관 ■ 학력인정확인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졸업(예정)증명서(재학사실증명서), 성적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서]나 [영사확인서]로 대체 가능 ■ 아포스티유확인서 : 외교통상부 영사서비스과 (02-2100-7600, http://www.0404.go.kr)
2016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이수자	동계 계절학기 성적이 반영된 최종 성적표	■ **2017. 1. 20(금)까지 입학관리팀에 등기우편으로 도착해야 함** - 단, 그 외 모든 서류는 실기고사, 영어고사 당일 제출 - 주말 및 공휴일은 접수불가

3 정원 외 특별전형 추가 제출서류

가. 농어촌학생편입학

지원자격	제출서류	비고
농어촌(읍·면) 소재 중·고교의 6년 전(全)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	■ 농어촌학생 학교장 추천서	■ 우리대학 서식 ■ 소속 고등학교장 직인 필수
	■ 중학교, 고등학교 전(全) 과정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각 1부	■ 학교 소재지 표기 (읍·면 주소 표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 또는 모 기준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부, 모, 지원자 각 1부 ※ 주소변동사항 반드시 기재 ■ 지역거주 확인 서류★ : 아래표 참조	■ 주민센터 및 해당기관 발급
농어촌(읍·면) 소재 초·중·고교 12년 전(全)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	■ 농어촌학생 학교장 추천서	■ 우리대학 서식 ■ 소속 고등학교장 직인 필수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全) 과정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각 1부	■ 학교 소재지 표기 (읍·면 주소 표기)
	■ 주민등록초본 1부 : 지원자 기준 ※ 주소변동사항 반드시 기재	■ 주민센터 발급

★ **지역거주 확인 서류 :** 농어촌(읍·면) 소재 중 · 고교의 **6년** 전(全)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만 해당

지역거주 확인 서류	발급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부, 모 각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개별사업장피보험자격내역서 : 피보험자용, 해당하는 부, 모 각 1부 ※ 농어촌 거주기간 중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직장 가입자로 1회 이상 구분된 자만 해당 -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부모가 2개 이상의 직장에 근무한 경우, 각 직장의 개별사업장피보험자격내역서 모두 제출해야 함(직장 소재지 반드시 표기) - 개별사업장피보험자격 내역에서 직장소재지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를 추가 제출(직장 소재지 반드시 표기) - 군인, 공무원의 경우 개별사업장피보험자격 내역서 대신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재학기간동안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부 또는 모의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와 다를 경우 실제 거주지가 읍·면 지역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직장 소재지, 재직기간 관련 추가정보가 필요한 경우 추후 별도 서류 요청 가능	고용노동청 각 지역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지원자의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한 경우 : 농어촌(읍·면) 소재 중 · 고교의 **6년** 전(全)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만 해당

이혼		사망	
제출서류	발급처	제출서류	발급처
■ 지원자 기본증명서 1부 ■ 함께 거주한(주소지 동일)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주민센터	■ 사망한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 1부	주민센터

나. 기회균등편입학

지원자격		제출서류	발급처
모든 지원자격 공통		■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본인 및 자녀 또는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 지원자 본인 기준, 발급기관장의 직인 필수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3개월 이내 발급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 또는 모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서류)	■ 시·군·구청 ■ 주민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공통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 또는 모 기준	■ 주민센터
	장애수당, 장애인연금부가급여, 자활근로자,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대상자	■ 복지급여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 확인서 1부 (장애인연금·장애수당수급자 확인서,자활근로자확인서,한부모가족증명서) :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서류	■ 시·군·구청 ■ 주민센터
	건강보험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복지급여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확인서 1부 :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지사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학생		■ 우선돌봄 차상위 계층 확인서 :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 또는 모 기준	■ 시·군·구청 ■ 주민센터

※ 지원자의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한 경우

이혼		사망	
제출서류	발급처	제출서류	발급처
■ 지원자 기본증명서 1부 ■ 함께 거주한(주소지 동일)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주민센터	■ 사망한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 1부	주민센터

다. 재외국민편입학

제출 서류 \ 지원자 구분	영주교포자녀	외국근무 재외국민	기타 재외국민	12년 전교육과정 해외이수자	북한이탈주민
종합기록표(원서접수 시 온라인 작성)	○	○	○	○	○
외국학교 관련사항 기록표(본교소정양식)	○	○	○	○	-
서약서(본교소정양식)	○	○	○	○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	○	○	-
초·중·고 전과정 성적증명서	○	○	○	○	-
초·중·고 전과정 재학사실증명서 [1]	○	○	○	○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	○	○	-	-
주민등록말소등본 또는 재외국민 표기가 된 주민등록등본	○	-	-	-	-
출입국사실증명서	○ (학생, 부모)	○ (학생, 보호자)	○ (학생, 부모)	○ (학생)	-
영주권 사본	○ (학생, 부모)	-	-	-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학생, 부모)	○ (학생, 보호자)	○ (학생, 부모)	○ (학생)	-
제3국 수학 인정 요청서(해당자)	○	○	○	-	-
보호자 직업에 따른 증빙 서류[2]	-	○	○	-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또는 통일부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시군구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담당관 발급)	-	-	-	-	○
학력인정증명서	-	-	-	-	○

1) 외국소재 재학학교 재학사실증명서에는 **입학년·월·일**과 **졸업년·월·일**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외국근무 재외국민 및 기타 재외국민 자녀의 **보호자 직업 증빙서류**

가. **공무원,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근무자** - 재직증명서(외국근무지 및 근무기간, 체류내용 명시)

나. **상사직원** - 재직증명서(외국근무지 및 근무기간, 체류내용 명시), 해외지사설치인증서 또는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재직기간 전체)

다.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 재직증명서, 정부초청 또는 추천서

라. **해외선교사** - 선교 단체장 발행의 선교파송 증명서(파송국가 및 파송기간 명시), 해당 종교단체장 추천서

마. **현지법인 근무자** - 법인등록증 사본, 재직(경력)증명서(직위 및 재직기간 명시), 보호자 체류국 세금납부 증명서(소득세 납부 증명서, 지원자격기간 중 3년치)

바.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영업허가서), 보호자 체류국 세금납부 증명서(소득세 납부 증명서, 지원자격기간 중 3년치)

서류제출 유의사항

영어고사(미술대학 지원자의 경우 실기고사) 당일에 고사종료 후 고사장별로 제출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한 [등기우편발송용 봉투표지]를 서류봉투 겉면에 부착하여 제출

- 입학원서, 학업계획서는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작성하며 우리대학교에서 직접 출력하므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 모든 서류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만 인정됩니다(외국학교는 6개월 이내). 원본제출이 불가한 경우, 발행기관의 원본대조필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행기관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사본으로 제출하되, 최종합격 후 반드시 2017. 2. 24(금)까지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 시에 졸업(수료)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자는 최종합격 후 졸업(수료)증명서를 2017. 2. 24(금)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서류 우측 상단에 수험번호, 성명을 기재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기관 발행 각종 증빙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나 [영사확인서(또는 영사확인도장)]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한국어,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는 한국어 번역문을 공증받아 원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전적대학이 2개 이상일 경우(편입학을 1번 이상 한 경우)에는 모든 학교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성적증명서에는 최종 학기 성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2016학년도 동계계절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의 경우 2017. 1. 20(금)까지 동계계절학기 성적이 반영된 최종 성적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합니다.
-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되지 않은 수험생은 지원자격 미달자로 처리됩니다.
- 제출서류에 대하여 위·변조조회, 학력조회 등을 실시하여 지원자격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하며 수험생은 이에 따른 법률적 책임을 지게됩니다.

4 서류 제출기한 및 방법

지원구분		제출일자(기한)	제출방법
일반계	일반편입, 학사편입, 정원 외 특별전형	2017. 1. 14(토)	영어고사 당일 고사 감독관에게 제출★
미술대학	일반편입, 학사편입	2017. 1. 18(수)	실기고사 당일 고사 감독관에게 제출★

★ **표시 : 고사당일 서류제출방법**
- 인터넷원서접수 사이트에서 [등기우편발송용 봉투표지]를 출력하여 서류봉투에 부착
- 제출서류 봉투에 동봉
- 영어/실기고사 당일. 고사종료 후 감독관에게 일괄 제출
- 원본제출이 불가한 경우 발행기관의 원본대조필을 받아 제출하고 발행기관의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사본 제출. 단, 최종합격 후 2017. 2. 24(금)까지 원본서류를 반드시 제출

- **동계계절학기 성적이 반영된 최종 성적표 : 2017. 1. 20(금)까지 제출**
- **학위(졸업,수료)예정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2017. 2. 24(금)까지 학위(졸업,수료)증명서 제출**
- **원본제출이 불가한 경우 발행기관의 원본대조필을 받아 제출하고 발행기관의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사본 제출. 단, 최종합격 후 2017. 2. 24(금)까지 원본서류를 반드시 제출**

Ⅴ. 전형방법

1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계 열		단 계 구 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영어	서류	실기	면접	합계
일반계	일반편입 정원 외 특별전형 (농어촌학생, 기회균등, 재외국민)	단계 모집	1단계	100	-	-	-	100
			2단계	70	30	-	-	100
	학사편입	일괄합산		100	-	-	-	100
미술대학	일반편입, 학사편입	일괄합산		-	-	100	-	100

2 선발기준

가.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에 따른 성적순으로 선발합니다.

나. 일반계(일반편입, 정원 외 특별전형(농어촌학생,기회균등,재외국민))는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선발합니다.

- 1단계 : 영어 100% (10배수)
- 2단계 : 1단계 성적 70% + 서류 30%

* 1단계 통과자는 따로 발표하지 않으며,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단계 탈락자에게는 2단계 심사료(20,000원)를 반환합니다. (입학원서 작성 시 작성한 환불계좌로 입금예정, 환불시기 : 2017. 2 중순, 추후 일정변경가능)

다. 모집인원 미달 시 우리대학교 충원절차에 의하여 선발합니다.

라. 미술대학의 경우 실기고사 평가에서 평가위원의 평균점이 60점 미만(100점 만점)일 경우 불합격처리하며, 수험생이 중도포기 혹은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됩니다.

마. 미등록 및 등록포기로 인한 충원합격자는 수학능력 등을 고려하여 예비순위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선발합니다.(P.20 참고)

바. 동점자는 우리대학교 동점자 처리기준(p. 17)에 따라 선발합니다.

3 영어고사

일반편입(미술대학 제외), **학사편입**(미술대학 제외), **정원 외 특별전형**

일 시	장 소	시 험 내 용		
		문 항	시 간	배 점
2017. 1. 14(토) 10:00 ~ 11:10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 (2017. 1. 11(수) 예정)	40문항	70분	2.0점×10문항=20점 2.5점×20문항=50점 3.0점×10문항=30점

4 미술 실기고사

일반편입(미술대학), **학사편입**(미술대학)

가.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7. 1. 18(수) 10:00 ~ 13:00
- 장소 :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2017. 1. 11(수) 예정)

나. 실기고사 내용

■ 미술대학 학과별 실기과목

학과	실기명	용지	준비도구	비고
현대미술과	유화 또는 아크릴화 중 택1 (주어진 대상(인물)의 유화 또는 아크릴화)	15호F 캔버스	유화물감, 아크릴물감 중 택1	■ 대학제공 : 화지, 캔버스, 이젤 ■ 수험생 준비 : 실기고사에 필요한 실기도구 등
공예학과	색채정밀묘사	켄트지 4절	수채화물감, 포스터칼라, 색연필, 마카, 붓, 파레트, 물통	
시각디자인학과	책표지 디자인(앞면)	켄트지 4절	제한 없음 (꼴라쥬기법 제외)	
산업디자인학과	아이디어스케치 및 렌더링 (2절 켄트지를 반분하여 왼쪽 또는 윗면은 아이디어스케치, 오른쪽 또는 아랫면은 렌더링)	켄트지 2절	연필, 지우개, 검정펜, 마카는 필수이며 그 이외의 재료는 자유롭게 준비하여 사용할 수 있음	

Ⅵ. 수험생 유의사항

1 기본사항

① 원서접수가 완료된 후 편입학원서의 변경 또는 취소는 불가능하오니 신중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와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② 지원자격을 확인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이며, 추후 지원자격 미달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③ 제출서류의 위조, 변조, 대리시험, 기타 부정행위자는 시험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하고, 입학이 허가된 이후에도 '입학취소' 및 '학적말소' 조치하며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④ 전형일 준비물 안내

-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전형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범위 : 사진과 생년월일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생년월일·사진 확인이 가능한 학생증(국내 대학 재학생에 한함) 중 하나

- 실기고사 응시자는 실기고사 도구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영어고사는 OMR 답안지를 사용하므로 반드시 우리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고사가 종료된 후, 반드시 고사감독관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⑤ 고사 중 각종 휴대용 통신기기(휴대전화, 태블릿PC, 무선송신기, 호출기, PDA, MP3, 전자사전 등) 및 기타 시험 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도구를 착용 또는 지참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시험의 원활한 진행과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퇴실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⑥ 서류 미제출자, 지원자격 미달자, 영어고사 및 실기고사 등 전형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하고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⑦ 합격여부는 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합격여부에 대한 확인은 합격자 발표 당일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http://admission.swu.ac.kr)를 통해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합격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으며 우리대학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⑧ 입학원서의 연락처는 충원 합격자 통보 종료시점인 **2017. 2. 16(목) 21:00**까지 항상 연락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입학원서에 기재된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본교 입학처 입학관리팀(02-970-5051~4)으로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⑨ 전형기간 중 수험생에게 알리는 사항은 개별통지하지 않고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므로 미확인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⑩ 합격자에 대한 학력조회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⑪ 합격자 중 서류제출 시에 졸업(수료)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자는 졸업(수료)증명서를 입학 전 **2017. 2. 24(금)까지** 입학관리팀(행정관 103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⑫ 우리대학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수학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모집인원과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습니다.

⑬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와 우리대학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⑭ 입학전형 성적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⑮ 본교 지원 수험생 중, 장애나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입시전형일에 별도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형일 7일 전까지 입학관리팀으로 지원요청하시기 바랍니다(02-970-5051~4).

⑯ 사범계(교육심리학과)지원자 중 교육공무원을 희망하는 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기준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2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공정한 고사 관리와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다음의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오니 수험생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통신기기(휴대폰, 태블릿PC 등) 소지 금지

고사 중 통신기기(휴대폰, 태블릿PC, 무선송신기, PDA 등)는 휴대할 수 없으며, 휴대사실이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퇴실 조치할 수 있습니다.

나. 본인 확인 절차 협조

본인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 본인의 신분증과 얼굴을 대조하여야 하므로 불편하더라도 반드시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불응할 경우 퇴실 조치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부정행위 간주자

- 대리고사(퇴실 및 사법처리)
- 폭력 및 위협행위자(퇴실 및 사법처리)
- 감독위원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수험생 또는 외부와 서로 신호하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듣는 행위
- 고사시간 종료 후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기타 감독관이 판단할 때 현저한 부정으로 보이는 위협행위를 하는 자(퇴실 및 사법처리)

3 동점자 처리기준

가. 단계모집 전형

■ **1단계 통과대상자에 대한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 전원 1단계 통과**

■ **최종 합격대상자에 대한 동점자 처리기준**

구 분		동점자 처리 기준
일반계	일반편입학 정원 외 특별전형 (농어촌학생, 기회균등, 재외국민)	① 영어고사 3.0점 배점 문항 점수가 높은 자 ② 영어고사 2.5점 배점 문항 점수가 높은 자 ③ 영어고사 2.0점 배점 문항 점수가 높은 자 ④ 서류평가점수가 높은 자 ⑤ 전적대학 성적 우수자

나. 일괄합산 전형

구 분		동점자 처리 기준
일반계	학사편입학	① 영어고사 3.0점 배점 문항 점수가 높은 자 ② 영어고사 2.5점 배점 문항 점수가 높은 자 ③ 영어고사 2.0점 배점 문항 점수가 높은 자 ④ 전적대학 성적 우수자
미술대학	일반편입학	① 실기고사 반영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가 적은 자 ② 전적대학 성적 우수자
	학사편입학	① 실기고사 반영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가 적은 자 ② 전적대학 성적 우수자

※ 동점자 처리원칙을 적용하여도 동점자가 있을 경우,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Ⅶ. 원서접수 및 등록

1 원서접수

가. 인터넷 원서접수

1) 입학원서 접수는 인터넷으로만 실시합니다.
2) 접수기간 : 2016. 12. 27(화) 10:00 ~ 12. 30(금) 18:00까지

나. 원서접수 절차

서울여자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접속 → (주)유웨이어플라이 로그인(회원가입)	■ (주)유웨이어플라이 홈페이지(http://www.uwayapply.com)
⇩	
서울여자대학교 선택(검색)	■ 인터넷 원서접수 중인 대학 목록에서 서울여자대학교를 선택 (신입학 정시모집과 구분하여 지원)
⇩	
모집요강 및 원서작성 유의사항 숙지	■ 지원자격 및 전형일정 등 확인
⇩	
입학원서 작성	■ 지원은 학과(전공)별로 지원함 ■ 사진업로드 : 지원자의 증명사진(3×4cm) jpg 파일 준비 ■ 전적대학이 2개 이상인 경우 해당사항 모두 입력 ■ 성적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재 ■ 입학원서 입력사항은 제출하는 서류와 일치해야 함 ■ 인터넷 원서접수 장애 문의 : (주)유웨이어플라이 1588-8988
⇩	
입력사항 확인	■ 전형료 결제완료 및 접수가 완료되어 수험번호가 부여된 후에는 원서작성 내용의 수정 및 취소가 불가함 ■ 전형료 결제 전 모든 작성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확인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전자결제	■ 전형료 결제를 해야만 접수가 완료되며, 결제를 하지 않고 원서작성만 하는 경우에는 원서가 접수되지 않음에 유의할 것 ■ 결제방식 : 계좌이체,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휴대폰결제 ■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 5,000원은 우리대학교에서 부담 (단, 기회균등편입학의 경우만 지원자 부담)
⇩	
접수확인	■ 전형료 결제완료 후, 접수확인과 동시에 자동 부여된 수험번호 확인
⇩	
수험표 및 등기우편발송용 봉투표지 출력	■ 결제 후 출력물 메뉴로 이동하여 [수험표] 출력 : 고사 당일에 신분증과 함께 지참함 ■ [등기우편발송용 봉투표지]를 출력하여 제출서류 봉투 겉면에 부착 후 영어고사 당일 고사감독관에게 제출 ▷ 미술대학 지원자는 실기고사 당일에 서류제출

※ 우리대학교에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학년도 편입학 원서접수업무를 (주)유웨이어플라이에 위탁하며, 수집된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계좌번호 등)는 입학전형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입시업무 처리 종료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폐기될 예정입니다. 다만, 합격생에 한해 학적부 생성 등의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2 전형료

구분			전형료
일반계	서류평가, 영어고사	일반편입, 정원 외 특별전형(농어촌학생, 재외국민)	90,000원
		정원 외 특별전형(기회균등)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 5,000원만 본인 부담
	영어고사	학사편입	80,000원
미술대학	실기고사	일반편입, 학사편입	100,000원

※ 인터넷 접수 수수료(5,000원)는 우리대학교에서 부담합니다. [단, 기회균등편입학의 경우만 지원자 부담]

※ 단계모집 전형(일반계_일반편입, 정원 외 특별전형(농어촌학생, 재외국민)의 1단계 탈락자에게는 2단계 심사료(20,000원)을 반환합니다(입학원서 작성 시 작성한 환불계좌로 입금예정, 환불시기 : 2017. 2 중순, 추후 일정 변경가능)

가. 입학전형료의 반환 사유 및 금액

①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 과납한 금액
②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③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④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됨)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나.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 반환

①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합니다.
② 위의 사유로 입학전형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인터넷 원서접수 때 입력한 환불계좌로 반환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 인터넷 원서접수 환불계좌로 반환받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합격자 발표 및 등록

가. 합격자 발표 : 2017. 2. 2(목)

①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http://admission.swu.ac.kr)

② 개별연락은 하지 않으며 합격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나. 합격자 등록 : 2017. 2. 3(금) 09:00 ~ 2. 6(월) 16:00

① 우리은행(고지서납부 및 계좌이체) 또는 전국은행(계좌이체)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② 등록금납부고지서는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접속하여 지원자 수험번호 등을 입력하여 출력하여야 합니다.

③ 등록금납부고지서를 출력하여 등록기간 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반드시 등록을 마쳐야합니다.
미등록 시 불합격자로 처리되어 차 순위자로 충원하므로 지정된 기간 안에 등록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2016학년도 기준)**

모집단위 또는 소속대학	입학금	수업료	합 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881,000	₩3,365,000	₩4,246,000
자연과학대학(수학과 제외), 정보미디어대학	₩881,000	₩4,037,000	₩4,918,000
수학과	₩881,000	₩3,928,000	₩4,809,000
미술대학	₩881,000	₩4,711,000	₩5,592,000

※ 위의 등록금(기타납부금은 제외된 금액임)은 2016학년도 등록금이며, 2017학년도 등록금은 추후 안내함

4 충원합격자 발표 및 등록

발표차수	발표기간	등록기간	발표방법	등록방법
1차 ~ 최종 충원합격자	2017. 2. 7(화) 22:00 이후 ~ 2. 16(목) 21:00까지	합격자 발표 시 안내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발표 또는 개별전화연락	우리은행 (고지서 납부 및 계좌이체) 및 전국은행(계좌이체)

가. 최초합격자 등록 기간이 종료된 후(2017. 2. 6(월)) 미등록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교의 입학전형 성적순위에 충원합격자를 선발하여 충원합니다.

나. 충원합격자 발표일정 및 방법은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 합격자 등록업무가 은행이나 본교 업무시간 내에 처리되므로 **등록업무가 종료된 이후 저녁 또는 심야에 충원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라. **최종 충원합격자 개별통보 시 빠른 의사결정(등록 또는 포기)으로 충원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충원기간 중에는 충원합격에 관한 연락이 가능하도록 지원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대기해야 하며, 연락처 변경 시 본교 입학관리팀(Tel. 02-970-5051~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수신자 부재, 입학원서 상의 연락처 오기재, 기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등 우리대학교의 지속적인 노력(3회 통화까지 연락이 안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을 때에는 차점자에게 합격을 통보할 수 있으니 연락두절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바. 충원합격자에 대한 전화통보 시 전화통화 내용을 녹취할 수 있습니다.
사. 충원합격자는 반드시 등록기간 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등록을 마쳐야 하며,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합격을 취소합니다.
아. **충원합격자 발표일정은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최종 확정된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최종 충원합격 통보마감일 : 2017. 2. 16(목) 21:00**
※ 최종 충원합격자 등록마감일인 2017. 2. 17(금)에는 2. 16(목)에 통보한 충원합격자의 등록업무만을 실시하며, **본교 등록 후 등록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2017. 2. 16(목) 19:00전까지 본교 입학처(02-970-5051~4)로 연락하여 소정의 등록포기절차를 거쳐야 등록포기가 됩니다.** 기일경과로 인해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5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

가. 우리대학교에 등록을 한 후 타 대학교로부터 충원합격 통보를 받고 우리대학교의 등록을 포기할 학생은 최종 충원 마감일인 **2017. 2. 16(목) 19:00전까지** 등록포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 공지사항 → 등록포기신청).
나. **미등록 충원 마감일 이후에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 예비합격자에게는 충원 합격의 기회가 차단되어 결과적으로 다른 수험생의 입학기회를 박탈하게 되니 신속하게 의사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등록포기를 신청하여 합격이 취소되면 추후 번복할 수 없습니다.

6 기타 학사안내

가. 전적대학 학점 인정

① 전적 대학 이수학점인정 및 교과목 이수는 우리대학교 학칙 및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② 편입학생은 전적 대학 학점인정상황에 따라 재학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나. 교직안내 (문의 : 기초교육원 02-970-5976)

① 초등학교 준교사, 중등학교 정교사(2급)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우리대학교 교직과정 설치전공으로 편입(일반, 학사)하여 교직과정 이수기준을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 교원자격검정령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제7호 기준)에 의한 해당 제1전공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교직과정 설치학과

국어국문학과(국어), 영어영문학과(영어), 불어불문학과(프랑스어), 중어중문학과(중국어),
일어일문학과(일본어), 경영학과(상업정보), 교육심리학과(상담), 의류학과(의상),
원예생명조경학과(식물자원・조경), 식품공학과(식품가공), 공예학과(디자인・공예)

② 제7호 기준 대상자는 복수전공 학위를 취득하더라도 주전공 이외에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③ 다음의 경우에는 제7호 기준에 의한 교사자격증 취득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수학교·유치원 준교사 이상, 사서, 보건, 전문상담, 영양, 실기 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학과에 편입한 경우
-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유치원 정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학과에 편입한 경우

다. 학사안내 (문의 : 학사지원팀 02-970-5024~5)

① 편입생도 복수, 부전공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② 편입생은 전과, 조기졸업을 할 수 없습니다.
③ 편입학 후 첫 학기에는 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라. 필수이수과목안내

① 우리대학에 편입학한 모든 학생은 기독교개론(2학점)과 경건회(2학기)를 필히 이수하여야 합니다.
※ 학사편입학의 경우, 기독교개론은 해당사항 없음

② 편입학한 모든 학생들은 공동체를 바탕으로 하는 기숙형 바롬인성교육 Ⅰ, Ⅱ, Ⅲ 과정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 학사편입학의 경우는 Ⅱ, Ⅲ과정만 이수

Ⅷ. 학교위치 및 교통안내

1. 주소

(우) 01797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621 서울여자대학교 입학관리팀

2. 연락처 TEL : 02-970-5051~4, FAX : 02-3399-2844, 홈페이지 http://admission.swu.ac.kr

3. 교통편

가. 학교버스: 학교 ↔ 태릉입구역(7번 출구) 간 운행

나. 지 하 철: 1호선, 6호선 석계역(4번 출구)에서 하차하여 시내버스 이용 가능
6호선, 7호선 태릉입구역(7번 출구)에서 하차하여 학교버스, 시내버스 이용 가능
6호선 화랑대역(4번 출구)에서 하차하여 도보로 15분소요

다. 시내버스: (정문) 73, 74, 82A, 82B, 202, 1225번, 1155번, 1156번 → 서울여대.육군사관행정안내소 하차
(남문) 1132번 → 화랑타운아파트 하차

라. 자가용 이용 시 주의사항 : 남문으로는 차량출입이 불가하므로 정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찾아오는 길



〈도보〉



2017학년도 편입학모집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온라인 작성(학사편입, 예·체능 계열 제외)

[지원동기 및 학업계획서]

지원학과(전공)		수 험 번 호	
성 명		생 년 월 일	

본교 편입 진학동기, 학과(전공)선택 이유, 졸업 후 진로계획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서술하시오.
(1,500자 이내)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귀하

2017학년도 편입학모집

[학력인정 확인서]

외국학교 관련사항	학 교 명			
	주 소			
	전화번호	(Fax)		
	홈페이지			
	E-mail			
확인기관 (해당 대사관 또는 영사관)			담 당 자	
			전화번호	

위 학교는 _____국가에서 인정하는 정규학교로서 대한민국의 【4년제 대학(　　), 전문대학(　　)】에 준하는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급기관장 :

직 인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귀하

2017학년도 편입학모집 : 농어촌학생편입학

[농어촌학생 학교장 추천서]

지원모집단위			수험번호	
성 명			생년월일	
재학기간	학교명		학교주소(정확한 주소를 기입)	재학기간
	초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중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거주지 확인 사항	6년 □	농어촌(읍·면)소재 **중·고교 6년 전(全)** 교육과정을 입학에서 졸업까지 모두 이수한 자로서 해당 기간의 재학기간 동안 **부모와 본인 모두 농어촌(읍·면)지역에 거주**하였음을 확인함
	12년 □	농어촌(읍·면)소재 **초·중·고교 12년 전(全)** 교육과정을 입학에서 졸업까지 모두 이수한 자로서 해당 기간의 재학기간 동안 **농어촌(읍·면)지역에 거주**하였음을 확인함
전형 취지 부합도	부모의 직업	(부) (모)
	직장 소재지	(부) (모)

위 학생은 귀 대학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학생 편입학모집 대상자로 인정되어 추천하며, 학생의 거주사실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 작성교사 (인)
휴 대 전 화 번 호 :
학 교 전 화 번 호 :

직 인

고등학교장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귀하

2017학년도 편입학모집

편입 2017 -

[등 록 포 기 각 서]

성 명		수 험 번 호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 ) -
지원모집단위	전형구분 : 일반 ( ) 학사 ( ) 농어촌학생 ( ) 기회균등( ) 재외국민 ( )		
	모집단위		

상기 본인은 서울여자대학교 2017학년도 편입학모집에 합격하여 등록하였으나, 아래의 타 대학교에 복수 합격하여 귀 대학교의 등록을 포기하고자 이에 등록포기각서를 제출합니다.

□ **복수합격** **대학(교) :** **학과(전공) :**

□ **기 타** **구체적 사유**

※ 첨부

1. 우리대학교 등록금 및 기타납부금 영수증 원본
2. 등록포기자 신분증 사본 1부
3. 지원자 명의의 통장사본 1부

년 월 일

본 인 : (인)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귀하

접수 확인자 : (인)